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산은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산은 2020 증권 투자신탁 제 1 호[주식]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은 2020 증권 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산은 2020 증권 투자신탁 제 1 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3.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본·지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dbasset.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2012.10.31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2.12.12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모집 또는 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 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이 투자설명서는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u>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u>	5p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5p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5p
3. 모집예정금액	5p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p
5. 인수에 관한 사항	5p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6p
<u>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u>	7p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7p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7p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7p
4. 집합투자업자	7p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7p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8p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9p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p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2p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5p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8p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22p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3p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27p
<u>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u>	29p
1. 재무정보	29p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1p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33p
<u>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에 관한 사항</u>	37p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37p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9p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39p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0p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40p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40p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1p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41p

43p

44p

47p

47p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48p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50p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산은 2020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29046)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Ae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a	종류 C-d	종류 Ce	종류 Cf	종류 Cw
한국금 융투자 협회 펀드코 드	28832	AB135	28833	28834	28835	28836	28837	98862	28838	28839	2884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중도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금액이 예정좌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때까지 판매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이 확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상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2) 모집장소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db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산은 2020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29046)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Ae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a	종류 C-d	종류 Ce	종류 Cf	종류 Cw
한국금 융투자 협회 펀드코 드	28832	AB135	28833	28834	28835	28836	28837	98862	28838	28839	2884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0.8.16	투자신탁 최초설정
2010.12.20	집합투자규약 변경(기부 클래스 신설)
2012.5.25	집합투자규약 변경(종류 Ae 수익증권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대우증권빌딩 16층 (대표전화 : 02-3774-8000)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2012.10.31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펀드 수	규모	
윤지용	1976	포트 폴리 오매	5개	172억원	- 12.8 ~ 현재 산은자산운용 운용팀 - 11.4 ~ 12.8 산은자산운용 Active 운용 1 팀

		니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0 ~ 11.4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07.1 ~ 10.10 이스타투자자문 주식운용팀 - 05.11 ~ 06.12 에프엔가이드 평가모델팀 - 02.3 ~ 05.6 우리투자증권 기업분석팀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졸)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이 투자신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f.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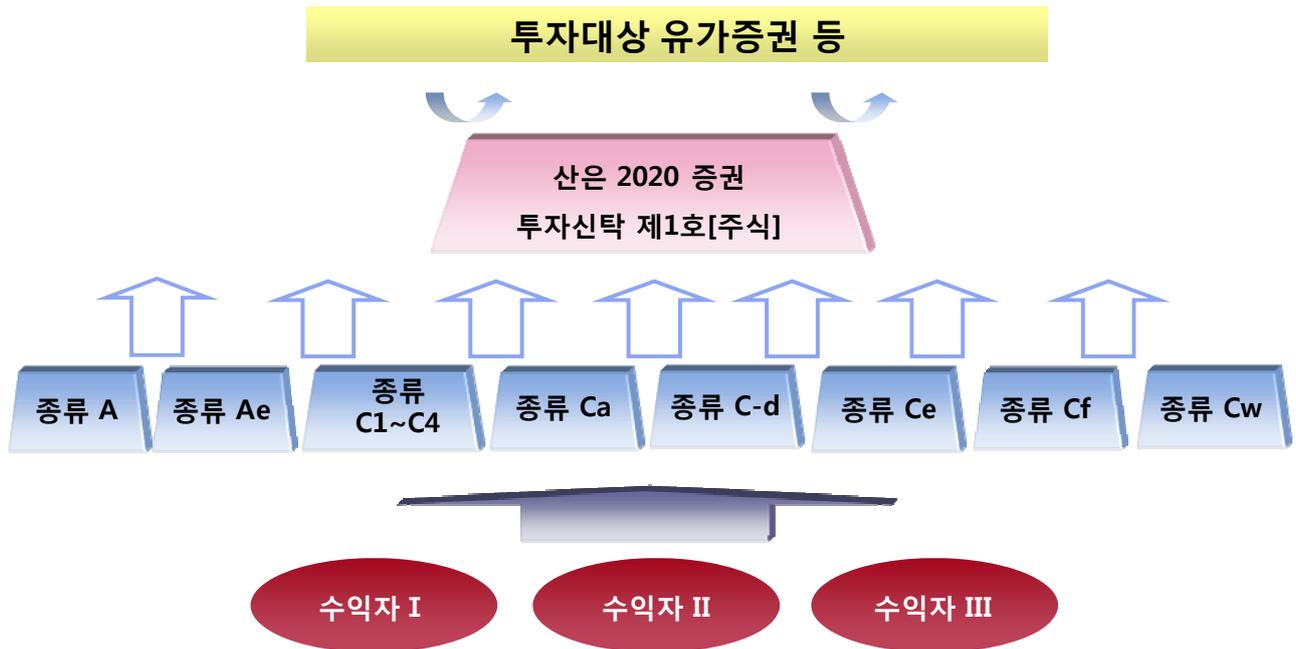
②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김경윤	2010.8 ~ 2012.12
윤지용	2012.12 ~ 현재

주1) 2012년 12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Ae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면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1	가입제한 없음
종류 C2	1 년이상 종류 C1 가입자
종류 C3	1 년이상 종류 C2 가입자
종류 C4	1 년이상 종류 C3 가입자
종류 Ca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투자자
종류 C-d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보수의 10%를 독거노인 지원 및 저소득층의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종류 Ce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종류 Cf	자본시장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중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종류 Cw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특정금전신탁

※ 이 투자신탁의 종류 C-d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 보수의 10%,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의 보수에서 인출하여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1. 독거노인 지원사업
2.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사업

각 종류별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및 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	------	-----------

①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 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⑤	장내파생상품	10% 이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법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⑥	집합투자증권등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⑦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⑧	증권의 대여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에 대한 대여
⑨	증권의 차입	20%이하	위의 ① 내지 ④에의한 증권에 대한 차입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 단기대출 :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2. 금융기관예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①이해관계 인과의 거래 제한 등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p>
②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함)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동일회사 발행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까지 :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함
③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p>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④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0%(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를 초과하는 행위	
⑥ 계열회사 발행한 증권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⑦ 후순위채권	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p>-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의 ① 내지 ④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의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가.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의 ① 내지 ④의 투자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의 ⑤ 내지 ⑨, 위의 ② 내지 ⑤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p>- 위의 ②의 본문, ④, ⑤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1) 주력제품 기준 내수시장 점유율 30% 이상 또는 글로벌 마켓 점유율 5 위권 이내업체로 투자 풀(Investment Pool)을 구성하고, 비 계량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한편 자체 개발한 Value-Momentum 모델을 통해 “Fundamental, Value, Momentum” 상위 20 개 내외 주식에 집중 투자하며, 분기별 Rebalancing 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 기본 운용전략

- 대부분을 2020 종목으로 구성



□ 주식 운용전략

A. 투자대상 주식 선정 방법

- ①STEP I. 펀더멘탈 점검(영업 안정성을 중심으로 투자 풀 구성)
 - ④주력 제품 기준 국내시장 점유율 30% 이상 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5 위이내 기업 추출
 - ⑤연간 매출액 기준 2,000 억원 이상, 시가총액 기준 1,000 억원 이상 기업으로 투자풀 압축
- ②STEP II. 투자 매력 점검(자체 개발한 VMSM 을 통해 상위 기업 順으로 Scoring)
 - ④Valuation 항목(P/E, P/B, P/S, P/CF)과 Momentum 항목(ROE 증감, 순이익 증가율, 20 일 및 240 일 주가 변동)의 결합 Scoring
 - ⑤일 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 기준으로 유동성 위험 제거
 - ⑥시가총액 규모별 Scoring 을 통해 대/중/소형주 그룹 상위 20 개 내외 주식 선정
- ③STEP III. 유효성 검증(Consensus Data 및 기업탐방 등을 통한 유효성 관리)
 - ④향후 기업이익 예상치를 이용한 선정 주식의 유효성, 타당성 최종 점검
 - ⑥포트폴리오로 선정된 주식은 기업탐방, 세미나 등을 통해 유효성,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

B. 주요 투자전략

- 대부분을 20 개 내외 종목으로 구성함(투자비중 70% 원칙)
- 종목별 투자비중: 동일가중 방식(조정 가능)
- 분기별 리밸런싱을 원칙으로 함

□ 추가수익 전략

- 중, 단기 수익률 제고 필요시 사용하며 투자비중은 30%이하를 원칙으로 함
- Bottom-Fishing 기법 : 기업 내재가치 대비 비이성적 급락 종목에 투자
 - > 단기급락시 분할매수, 주가회복과정에서 분할 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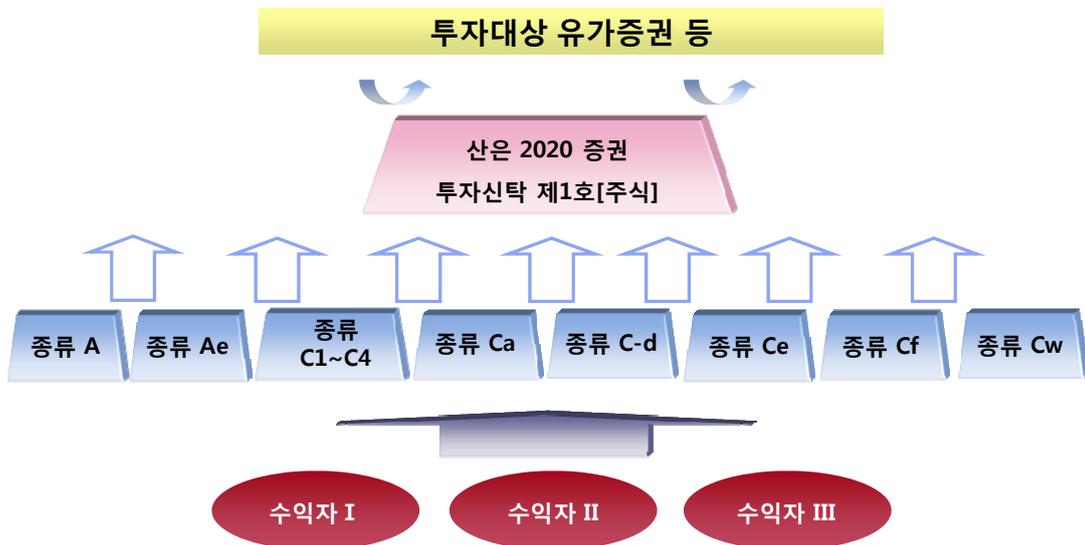
2)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 지수 : $KOSPI \times 90\% + Call \times 10\%$

- KOSPI: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한국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종합주가지수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한 시가총액식 지수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국내 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다. 위험 관리

■ 위험관리 체계

당사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위험관리의 정책수립·감독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총괄합니다. 운용조직과 독립된 위험관리담당부서는 투자운용과 관련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전적인 위험 점검을 실시하며, 집합투자기구 설정 이후에는 운용내역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험을 관리합니다. 매월 자산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전략 및 운용정책을 수립하며, 성과평가회의를 통하여 포트폴리오 위험 및 요인분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단계별로 리스크관리 조치를 시행하여 투자전략을 재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층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운용 부서의 실시간 자체점검 -> 컴플라이언스 팀 점검 -> 내부 감사로 연계되는 다층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통해 투자 제약 및 고객 부여 제약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시 방편식의 관리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에 기초한 사전 컴플라이언스에 주력하여 오류 발생 확률을 최소화 합니다.

■ 세부 위험관리 전략

위험요인	세부 위험 및 위험관리방안			
		주의단계	경계단계	위기단계
수익률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률 부진 위험 관리 • BM 대비 괴리도 체크 및 관리 (수시) • 3단계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진원인 파악 • 부진종목 펀더멘탈 재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진종목 교체 • 수익률 회복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밸런싱 조기 시행 (필요시 월별 조정)
시장 하락 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국면에 따라 대세 하락 국면에서는 헷지전략 적극적 Hed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국면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자산운용위원회의 판단에 근거 • Hedge 전략 자체 • Hedge 전략 실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 상승기 시장 하락기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주식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레버리지위험	효과(지렛대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상품은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에 따른 위험 및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소수 주식종목에 집중투자함으로써 다수의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일반적인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보다 개별 종목 변동성에 더 민감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변동성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 규모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조기환매위험	수익자가 환매요청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는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위험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며 주로 20개의 소수 주식에 투자하므로 투자등급 5 등급중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장기 성장형 투자전략을 추구하고 매우 높은 수준의 가격변동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산은자산운용회사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 등급	위험 수준 내용	투자대상 상세	적합한 투자자 유형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 ¹⁾ 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높은 수준의 자본소득을 추구하면서도 보유 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환위험에 노출된 자산에 5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높은 수준의 자본소득 및 일부 안정적인 장기수익을 추구하면서도 보유 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
3등급	중간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차익거래를 주요 투자전략으로 하여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안정적인 장기수익 및 일부 높은 수준의 자본소득을 추구하면서도 보유 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
4등급	낮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채권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면서도 보유 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 MMF 등 단기 현금성 자산위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기여유자금을 안정적인 수익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

1) 고위험자산: 주식, 파생결합증권, 후순위채, 투기등급(BB+ 이하)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관련 자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단, 고위험자산 중 일부 자

산에 대하여 원금보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음

- 2) 각 위험등급 내 투자대상 편입비율은 평균수준을 나타내며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3) 투자대상 상세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사한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영업시간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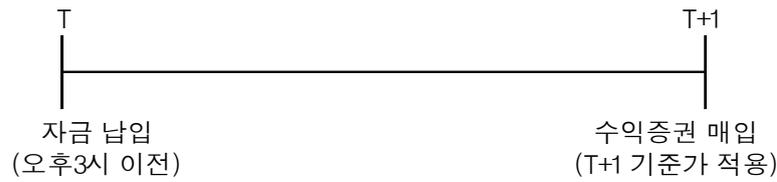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Ae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면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1	가입제한 없음
종류 C2	1 년이상 종류 C1 가입자
종류 C3	1 년이상 종류 C2 가입자
종류 C4	1 년이상 종류 C3 가입자
종류 Ca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투자자
종류 C-d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보수의 10%를 독거노인 지원 및 저소득층의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종류 Ce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종류 Cf	자본시장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증권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종류 Cw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특정금전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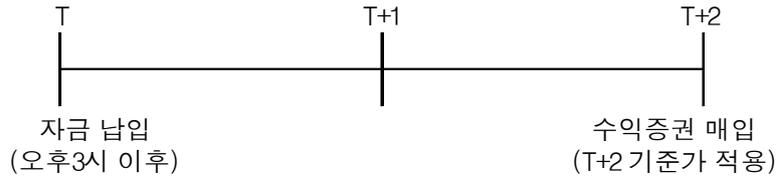
각 종류별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T+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영업시간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온라인 환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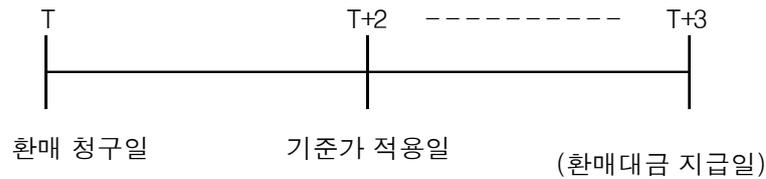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T+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T+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T+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T+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환매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투자자의 환매금액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구 분	수수료율	비고 (지급시기)
	종류A, Ae, C1, C2, C3, C4, Ca, C-d, Ce, Cf, Cw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주1)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또는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증권간 전환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종류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종류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4. 보유기간에 따른 종류별 수익증권간 전환은 판매수수료 체계가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간으로 한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되,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매년 동일한 일자를 전환일로 정하므로 다음 전환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또한, 최초 투자이후 추가 매수하는 수익증권은 추가매수시점에 관계없이 전환일 일괄전환하며, 추가매수일이 전환일과 동일할 경우, 추가 매수절차가 완료되는 일자의 익영업일에 전환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⑤ 수익자가 전환일 이전에 일부환매를 신청하여 환매일과 전환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환매절차가

완료되는 일자의 익영업일에 전환합니다.

⑥규약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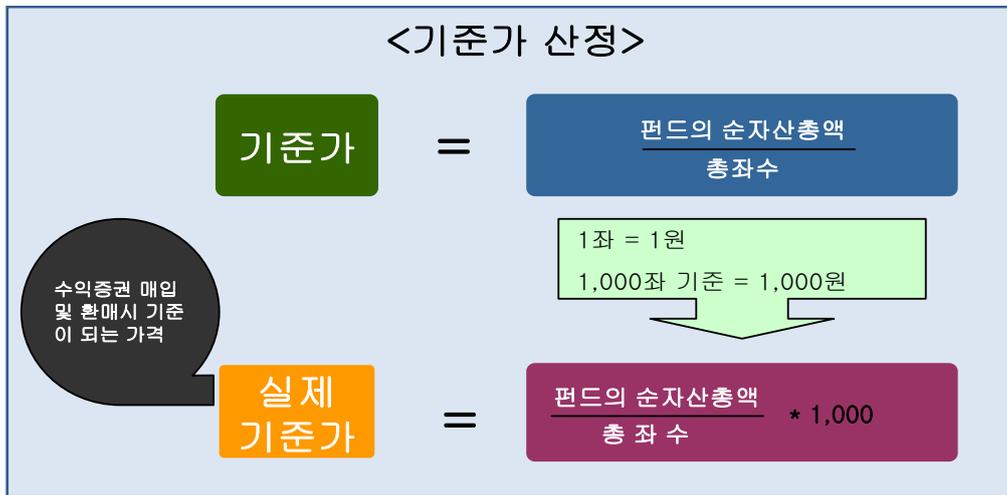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dbasset.co.kr)·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상장자산유동화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자산유동화증권에 한정)
비상장자산유동화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위의 상장자산유동화증권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다만,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1)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2) 업무 : 법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적용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이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A	가입제한은 없으며,	1.0%이내*	없음	30일미만: 이익금	없음

	선취판매 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의 70%
Ae	투자매매업자·투자 중개업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면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 증권	-최초설정일~2012.12.31 : 납입금액의 0.70% 이내* -2013.01.01~2013.12.31 : 납입금액의 0.60% 이내* -2014.01.01~신탁계약해지 : 납입금액의 0.50% 이내*		30일 이상 90일 미 만: 이익금의 30% (단, 종류C2, 종류 C3, 종류C4 수익 증권의 경우 수익 증권 전환 후 환매 를 청구하는 경우 는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아니하 나, 전환후 추가납 입분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C1	가입제한 없음	없음		
C2	1 년이상 종류 C1 가입자			
C3	1 년이상 종류 C2 가입자			
C4	1 년이상 종류 C3 가입자			
Ca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투자자			
C-d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보수 의 10%를 독거 노인 지원 및 저소득층의 장학 사업 에 사용하는 경우			
Ce	투자매매업자·투자 중개업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Cf	자본시장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법에 따 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법인 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Cw	투자매매업자·투자 중개업자의 일임 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 중개업자의 특정금전신탁				
부과기준		납입금액			이익금

*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Ae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a	종류 C-d	종류 Ce	종류 Cf	종류 Cw	
집합투자업자보수	0.70											매 3 개월 후급 및 투자신탁 전부해지 시
투자매매업자·투자 중개업자 보수	0.50	0.35 주6)	1.50	1.25	0.99	0.89	0.70	0.90	0.80	0.03	0.00	
신탁업자 보수	0.02											
일반사무관리보수	0.0125											
기타 비용	0.00 75	0.01 03	0.00 75	0.00 75	0.01 02	-	-	0.00 79	0.00 76	-	0.00 76	사유발생 시 (주 1 참조)
총보수 및 비용	1.24 00	1.09 28	2.24 00	1.99 00	1.73 27	1.62 25	1.43 25	1.64 04	1.54 01	0.76 25	0.74 01	-
증권 거래비용	0.92 74	0.89 77	0.92 12	0.95 21	2.14 64	-	-	0.93 71	0.92 18	-	0.90 30	사유발생 시 (주 3 참조)

주1) 기타비용은 증권 의 예약 또는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기간(2011.8.16~2012.8.15)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기간(2011.8.16~2012.8.15)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5) 종류 C4, Ca, Cf 수익증권은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2012.10.31) 현재 미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이므로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6) 종류 Ae 수익증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수율은 최초 설정일부터 2012년 12월 31까지 적용되며, 이후의 보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a.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연 0.30%

b. 2014년 1월 1일 이후: 연 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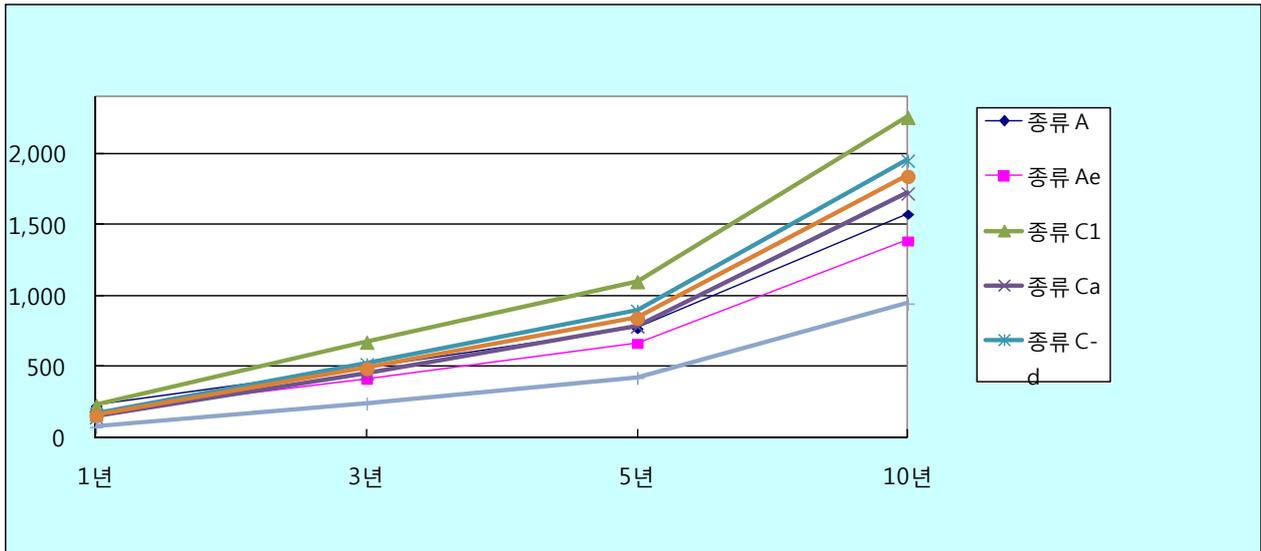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천원)

구분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6	489	772	1,579
종류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1	415	668	1,390
종류 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0	676	1,103	2,261
종류 C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7	456	788	1,725
종류 C-d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8	521	898	1,956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8	490	845	1,845
종류 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8	244	425	948
종류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6	237	413	921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 A, Ae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최대한도인 납입금액의 1% 및 0.7%를 가정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마다 적용되는 선취판매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3) 종류 C1 수익증권에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시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로 자동 전환 되므로 이상의 예시에서는 전환을 가정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참고로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의 경우에는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전환형 종류이므로 투자자는 종류 C1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다. 집합투자업자보수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수의 공익단체 기부

이 투자신탁의 종류 C-d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 보수금액의 10%,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의 보수에서 인출하여 공익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1. 독거노인 지원
2.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위 (1)에 의한 이익금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 (3)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4)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5)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6)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8)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9)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 - 국내비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 이거나,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2 기(2011.08.16 - 2012.08.15)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1 기(2010.08.16 - 2011.08.15)	삼덕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 재무정보

(단위: 원, %)

대차대조표		
항 목	제 2 기	제 1 기
	(2012.08.15)	(2011.08.15)
운용자산	47,667,404,914	29,332,028,987
증권	47,506,707,900	27,595,629,800
파생상품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현금 및 예치금	160,697,014	1,736,399,187
기타 운용자산	0	0
기타자산	4,282,624	1,238,676,902
자산총계	47,671,687,538	30,570,705,889
운용부채	0	0
기타부채	503,703,815	1,435,386,018
부채총계	503,703,815	1,435,386,018
원본	50,981,398,864	25,053,666,770
수익조정금	-303,455,059	4,380,793,904
이익잉여금	-3,509,960,082	-299,140,803
자본총계	47,167,983,723	29,135,319,871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 기	제 1 기
	(2011.08.16 - 2012.08.15)	(2010.08.16 - 2011.08.15)
운용수익	-3,509,115,213	-306,262,796
이자수익	109,218,382	47,392,296
배당수익	566,370,800	221,583,800
매매/평가차익(손)	-4,184,704,395	-575,238,892
기타수익	3,635,711	11,223,863
운용비용	0	0
관련회사 보수	0	0
매매수수료	0	0
기타비용	4,480,580	4,101,870
당기순이익	-3,509,960,082	-299,140,803
매매회전율	513.56	485.86

주1)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경우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정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가. 종류A 수익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8.16 - 2012.08.15	78	78	127	121	47	45	158	144
2010.08.16 - 2011.08.15	0	0	99	124	20	26	78	9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종류Ae 수익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8.16 - 2012.08.15	0.000	0.000	0.039	0.038	0.000	0.000	0.039	0.04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 종류 C1 수익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8.16 - 2012.08.15	9	9	13	12	19	18	2	2
2010.08.16 - 2011.08.15	0	0	37	43	28	33	9	1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라. 종류C2 수익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8.16 - 2012.08.15	0	0	19	18	1	1	18	16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마. 종류Ce 수익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8.16 - 2012.08.15	9	9	8	7	7	7	10	9
2010.08.16 - 2011.08.15	0	0	12	14	3	4	9	1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바. 종류Cf 수익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8.16 - 2012.08.15	173	173	150	151	0	0	323	297
2010.08.16 - 2011.08.15	0	0	173	170	0	0	173	174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 종류Cw 수익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8.16 - 2012.08.15	6	6	1	1	4	4	2	2
2010.08.16 - 2011.08.15	0	0	13	14	7	8	6	7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 종류 C-d 수익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8.16 - 2012.08.15	0.029	0.028	0.086	0.078	0.000	0.000	0.115	0.101
2010.08.16 - 2011.08.15	0.000	0.000	0.030	0.034	0.001	0.002	0.029	0.028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 C3, C4, Ca, Cf 수익증권: 연도별 기간 중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설정일 이후
	11.11.01 ~12.10.31	10.11.01 ~12.10.31	
통합 클래스	-9.58	-5.54	1.19
비교지수	0.61	1.20	4.26
A 클래스	-10.69	-6.71	-0.05
비교지수	-0.62	-0.03	2.99
Ae 클래스	-	-	-2.05
비교지수	-	-	2.51
C1 클래스	-11.57	-7.60	-1.00
비교지수	-1.59	-1.01	1.98
C2 클래스	-11.35	-	-11.54
비교지수	-1.35	-	3.40
C3 클래스	-	-	-4.95
비교지수	-	-	-2.34
Ce 클래스	-10.95	-6.99	-0.35

비교지수	-0.91	-0.33	2.68
Cw 클래스	-10.24	-6.24	-0.39
비교지수	-0.13	0.46	2.87
C-d 클래스	-11.03	-	-9.37
비교지수	-1.01	-	-4.84

주1) 비교지수: $Kospi \times 90\% + Call \times 10\%$

2) 상기 수익률은 증권신고서의 작성기준일(2012.10.31)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종류 C3, C4, ,Ca, Cf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작성기준일(2012.10.31) 현재 미설정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단위: %)

기관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11.11.01 ~12.10.31	10.11.01 ~11.10.31
통합 클래스	-9.58	-1.33
비교지수	0.61	1.80
A 클래스	-10.69	-2.56
비교지수	-0.62	0.56
Ae 클래스	-	-
비교지수	-	-
C1 클래스	-11.57	-3.44
비교지수	-1.59	-0.42
C2 클래스	-11.35	-
비교지수	-1.35	-
C3 클래스	-	-
비교지수	-	-
Ce 클래스	-10.95	-2.86
비교지수	-0.91	0.26

Cw 클래스	-10.24	-2.07
비교지수	-0.13	1.06
C-d 클래스	-11.03	-6.10
비교지수	-1.01	-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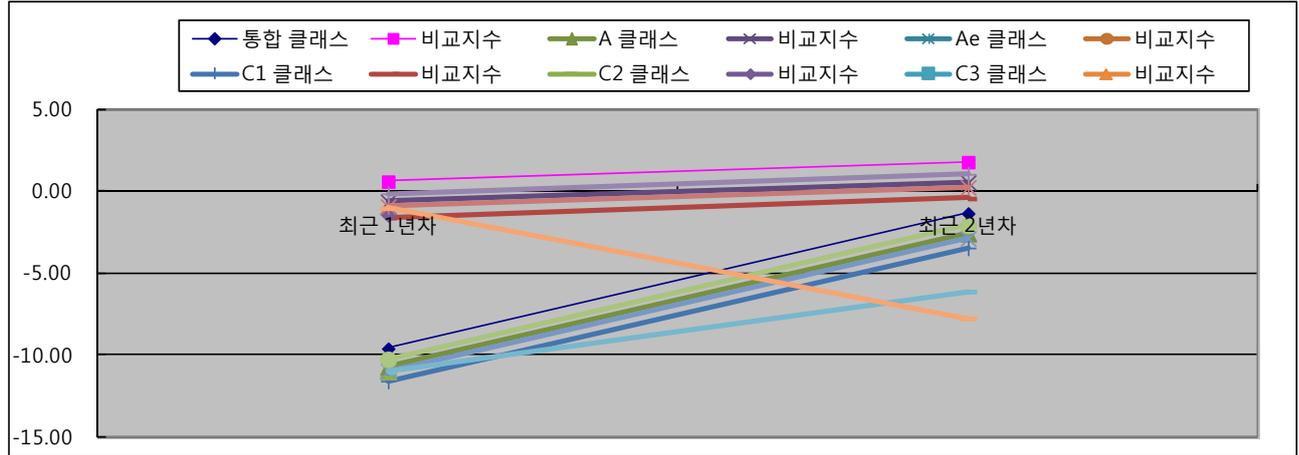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Kospi × 90% + Call × 10%

2) 상기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3) 상기 수익률은 신고서의 작성기준일(2012.10.31)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종류 Ae, C3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작성기준일(2012.10.31) 현재 설정 후 1년 미만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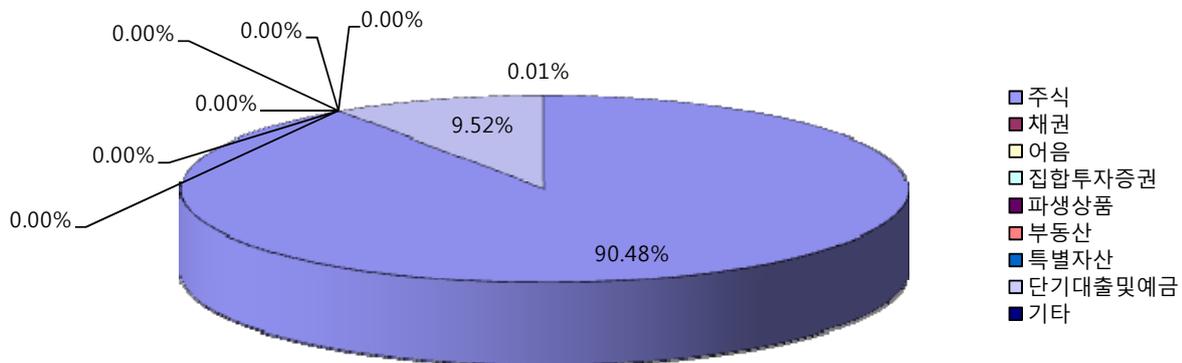
5) 종류 C4, .Ca, Cf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작성기준일(2012.10.31) 현재 미설정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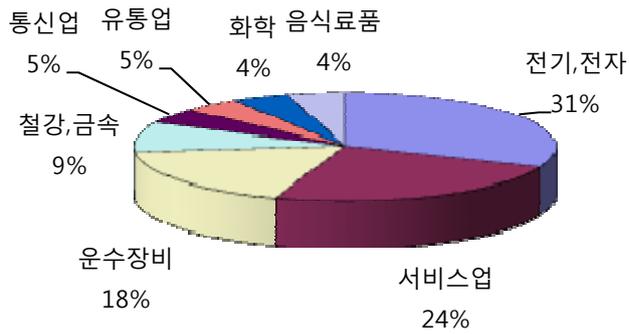
(2012.8.15 기준, 단위: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431	0	0	0	0	0	0	0	0	45	0	477
	(90.4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52)	(0.01)	(100.00)
합계	431	0	0	0	0	0	0	0	0	45	0	477
	(90.4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52)	(0.01)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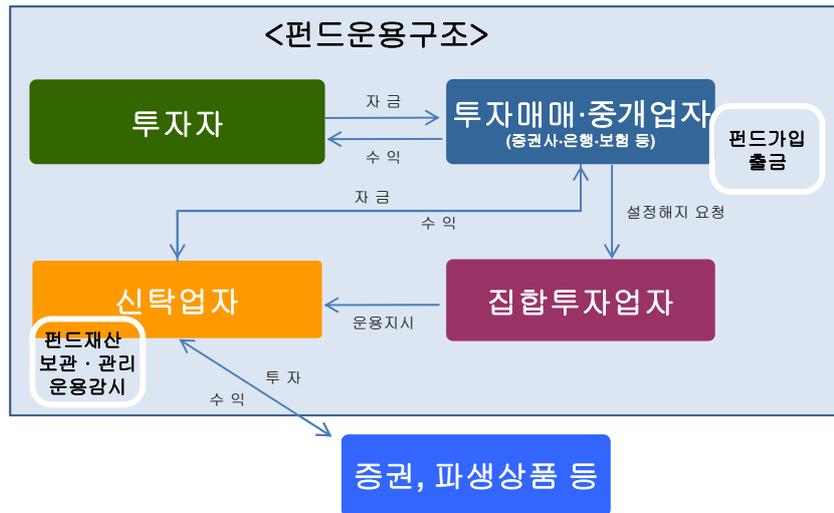


(1) 국내주식 업종별 구성현황 [2012.8.15 현재 / 단위 : 억원, %]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전기,전자	135	31.27
2	서비스업	104	24.11
3	운수장비	77	17.84
4	철강,금속	39	9.00
5	통신업	20	4.53
6	유통업	19	4.45
7	화학	19	4.42
8	음식료품	19	4.38
	합 계	431	100.00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대우증권빌딩 16층 (☎02-3774-8000, www.kdbasset.co.kr)
회사 연혁	1996. 5 회사설립(서울투자신탁운용) 1997. 5 투자자문업등록, 투자일임업허가 1998.12 자산운용회사등록 2000.06 증자(최대주주 대우증권 변경) 2004.05 증자(최대주주 산업은행 변경) 2004.07 산은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자본금	389 억원(2012년 3월말 기준)
주요주주현황	산은금융지주(100%)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수익자명부 작성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예탁결제원에 위탁

하여야 합니다.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자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12.3.31	'11.3.31	항 목	'11.4.1~ '12.3.31	'10.4.1~ '11.3.31
1. 현금및예치금	35,612	36,682	1. 영업수익	14,257	13,677
2. 종속기업투자	25,288	28,047	2. 영업비용	27,416	12,068
3.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	-	3. 영업이익	(13,159)	1,609
4. 매도가능금융자산	605	607	4. 영업외수익	28	16
5. 대출채권	570	620	5. 영업외비용	6	7
6. 유형자산	369	629	6.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13,137)	1,619
7. 무형자산	3,235	3,161	7. 법인세비용	(2,853)	389
8. 기타자산	10,309	3,577			
9. 당기법인세자산	-	228			
10. 이연법인세자산	4,607	1,223			
자산총계	80,595	74,776	당기순이익	(10,284)	1,230
1. 퇴직급여부채	266	416			
2. 총당부채	21,402	5,947			
3. 당기법인세부채	243	-			
4. 기타부채	1,431	875			
부채총계	23,343	7,238			
1. 자본금	38,895	38,895			
2. 자본잉여금	6,529	6,529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	4			
4. 이익잉여금	11,826	22,110			
자본총계	57,252	67,538			

라. 운용자산 규모(2012.10.31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 상품	부동산	특별 자산	재간접	실물 자산	총계
수탁고	3,899	2,321	15,074	29,117	5,114	1,977	6,021	1,902	-	65,42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업무의 위탁]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02-2073-7114)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2001년 01월 국민·주택은행 합병, 국민은행으로 새출발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02-2168-04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채권평가	KIS채권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4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건물 4층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npricing.co.kr	www.bond.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

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 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 동의를 받은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임의해지 절차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투자신탁 원본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임의해지할 경우에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해당 투자신탁이 해지되고 임의해지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가능하다고 통지합니다. 임의해지일

이전에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산을 시장에서 모두 매각하여 현금화시키며, 해지일 당일에 투자자의 수익증권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지점,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아래의 수시공시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www.kdbasset.co.kr),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상기의 수시공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증권 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①선정시 고려사항(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 거래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②선정절차 - 중개회사의 평가를 통하여 각 자산별로 매매위탁가능 중개회사를 선정한다. - 선정된 중개회사는 월간 또는 분기 중개회사의 평가를 통하여 교체 가능하다.
	③중개회사의 평가 - 거래 중개회사에 대한 평가는 각 자산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주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자들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를 부여한다. - 중개회사의 평가자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고, 각 팀의 평가결과는 담당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 매매담당부서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자산별 적용기간의 매매위탁 배분계획을 세우고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식형투자신탁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 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u>의결권</u> 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

	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 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